



대전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102922 회사에 관한 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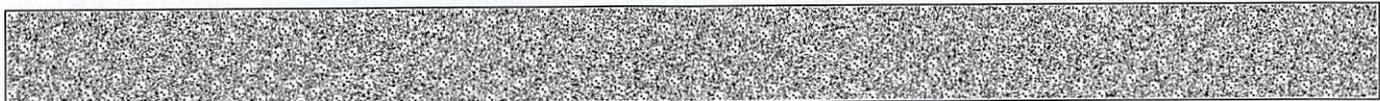
원 고 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주)KEB하나은행 본점)
 대표이사 함영주

2.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대경빌딩 신한은행 본점)
 대표이사 위성호

3.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우리은행 본점)
 대표이사 손태승

4.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기업은행)
 대표자 은행장 김도진

5.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여의도동,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정완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임진성

피 고 주식회사 골프존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40 (도룡동, 골프존대전사옥)
 대표이사 박기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변 론 종 결 2018. 5. 23.
 판 결 선 고 2018. 5. 30.

주 문

1. 피고의 2018. 3. 2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제5호 의안 [(주)골프존뉴딘홀딩스로부터 '조이마루 사업부'의 양수를 승인하는 건]에 대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8,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2018. 4. 19. 기준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6,275,415주 중 1,159,186주(약 19%)를 보유한 주주들이다.

2017. 12. 31. 기준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골프존뉴딩홀딩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골프존뉴딩,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골프존뉴딩'이라 한다)로 발행 주식 6,275,415주 중 1,272,696주(지분율 20.28%)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이하 '주식회사' 모두 생략)	보유주식
하나은행	605,317주
신한은행	264,870주
우리은행	288,667주
중소기업은행	269주
한국증권금융	63주
합 계	1,159,186주

나. 피고 회사의 골프존뉴딩의 조이마루사업부 양수 결의

피고 회사는 2018. 3. 8. 개최된 이사회에서 골프존뉴딩의 조이마루사업부를 94,893,364,495원(VAT 별도)에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라 한다)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의 양수'에 해당하여 2018. 3. 23.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7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위 영업양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서면통지로서 그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8. 3. 23.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제5호 안건으로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진행하





였는데, 이 사건 총회 당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6,272,470주이고, 출석주식수는 5,151,899주였는바, 이 사건 결의에는 3,616,013주가 찬성하여 특별결의 요건(참석의결권 2/3 3,434,600주, 발행주식총수 1/3 2,090,824주)를 충족하였다. 이 사건 결의에는 골프존뉴딘이 참여하여 골프존뉴딘의 주식수 1,272,696주가 출석주식수 및 찬성주식수에 포함되었다.

다. 이 사건 양수의 해제결의

피고 회사는 2018. 5. 9.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양수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수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2.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하여 골프존뉴딘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령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 제2항·제3항 및 제542조의12 제3항·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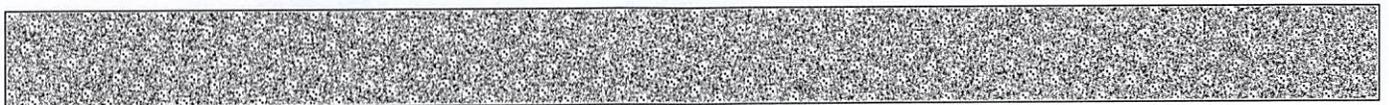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상법 제368조 제4항의 특별한 이해관계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골프존뉴딘은 이 사건 양수의 양도인으로서 이 사건 양수계약의 거래당사자이며 피고 회사의 직접 거래상대방인 점, ② 골프존뉴딘은 이 사건 양수로 94,893,364,495원(VAT 별도)의 양수금액을 직접 취득하게 되는 반면, 피고 회사는 동액 상당을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어 골프존뉴딘과 피고 회사는 쌍무계약상 상호대립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골프존뉴딘과 피고 회사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충되는 점, ③ 이 사건 결의로 확정되는 골프존뉴딘의 위 양수금액에 대한 권리취득은 골프존뉴딘이 피고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골프존뉴딘이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골프존뉴딘은 이 사건 결의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의결권이 배제되어야 하는바, 골프존뉴딘의 의결권을 참석의결권수와 찬성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결의는 참석주식수 3,879,203주 가운데 2,343,317주가 찬성함으로써 특별결의 요건인 참석의결권수의 2/3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 이 사건 결의는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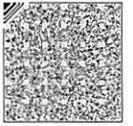


방법에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어 상법 제376조에 따라 취소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규	<u>정재규</u>	
	판사	강창효	<u>강창효</u>	
	판사	차은주	<u>차은주</u>	



정본입니다.

2018. 5. 30.

대전지방법원

법원주사보 박소정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